

- 영덕 주민행복 상생발전 포럼을 위한 -
원전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운영사업 과업지시서

2015. 1



I 과업의 개요

1. 과업명

- ☐ 원전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운영사업 용역

2. 목 적

- ☐ (재)경북테크노파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가 『원전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운영사업』을 00000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 발주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위함

3. 행사개요

- ☐ 행 사 명 : 원전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
- ☐ 기 간 : 2015. 2. 9(월) ~ 2. 16(월) [6박8일]
- ☐ 장 소 : 일본, 유럽 등
- ☐ 주 최 : 경상북도, 영덕군, 한국수력원자력(주)
- ☐ 주 관 : (재)경북테크노파크
- ☐ 참 석 자 : 15명 정도
 - 영덕군수, 경상북도 과장, 한국수력원자력(주) 전무, 영덕 주민행복 상생발전 포럼 위원 등
- ☐ 주요행사
 - 『원전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운영사업』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, 숙박 및 운송수단 예약, 해외 견학 진행, 운영 등 행사전반
- ☐ 사 업 비 : 금사천오백만원정(금45,000,000원, VAT포함)
 - 영덕 주민행복 상생발전 포럼 위원 8명(예정)에 대한 용역 입찰
 - 경상북도, 영덕군, 한국수력원자력(주) 7명(예정)은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참여

4. 과업의 범위 및 수행기간

□ 과업의 범위

- 원전 선진지(일본, 유럽 등)의 상생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를 위해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견학 프로그램 기획
- 해외 원전지역 발전 우수사례 탐방을 통하여 원전 관련 글로벌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견학 일정 기획
- 견학 일정별 세부 일정 수립(시간계획 포함) 및 진행
- 견학에 따른 항공권(왕복)·차량·숙박 등 제반 준비사항 계획 수립 및 진행
- 기타 견학에 필요한 제반사항

□ 용역수행기간

- 계약 체결일로부터 견학 종료일후 정산완료시까지
- * 과업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행사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로 함

5. 사업비 지급 및 정산

- 사업비는 당 재단의 규정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정산·지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

II

과업의 주요내용

1. 사업내용

가. 일반내용

- 과업수행자는 「과업지시서」를 참고하여 여행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견학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(재)경북테크노파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 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가. 세부내용

- 항공권(왕복) 확보, 숙박시설, 식사 등의 계획이 완료되어 (재)경북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모든 제반사항을 사업 발주자와 협의하여 운영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여행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(재)경북테크노파크가 요구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선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하는 각종 연수 및 산업시찰에 참여할 수 없다.
- 반드시 인솔자와 상의하여 쾌적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원활한 원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행 일정안내 및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여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피해 발생시 민·형사상 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.

1. 일반사항

- ☐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·성실의 의무를 진다.
- ☐ 과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민·형사상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☐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2. 과업수행지침

- ☐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☐ 과업 수행은 『예산회계법』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, 『회계 예규』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☐ 과업수행자는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, 사업내용, 추진체계, 추진일정,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업무 편람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하고,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☐ 사업수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, 조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☐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요구 할 수 있다.
- ☐ 소요 예산의 ‘경비’ 부문은 사업종료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☐ 행사결과 증빙서 제출 : 행사 종료 후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(재)경북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기타 보고서 제출 요구 시 (재)경북테크노파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

3. 과업 추진일정

- ☐ 행사일 : 2015. 2. 9(월) ~ 2. 16(월) [6박8일]
- 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청구 2.16(월) 이후

IV 과업의 수행지침

1. 과업의 이행방법

- ☐ 각계의 전문가, 유관기관 단체들의 폭넓은 의견개진 및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.
- ☐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갑과 을의 용역 수행진 간에 협의하여 보완, 조정한다.
- ☐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행사추진단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수행한다.
- ☐ 본 과업은 (재)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.
- 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행사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☐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.
- ☐ 본 용역은 헌신적인 자세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.

2. 기타사항

- ☐ 과업기간 중에는 (재)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 시 지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- ☐ 과업수행 중 (재)경북테크노파크와 사전에 일부계획이 변경 될 경우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 있어 현장대리인이나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

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☐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,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(재)경북테크노파크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·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